



## 내부통제준칙

효력개시일자 : 2021 년 4 월 9 일

준칙번호 : PR-CM-KR-008

### 총 칙

#### 1. 목적

- 1-1. 이 준칙은 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1-2. 내부통제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.
  - 1-2-1 내부통제활동의 효율성 및 유효성
  - 1-2-2 재무 및 경영정보의 신뢰성, 완전성 및 적시성
  - 1-2-3 관계법령, 감독규정 및 은행의 정책 및 절차준수

#### 2. 내부통제의 운영원칙

- 임직원은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2-1. 업무의 기능적 분리, 책임의 명확화, 회계자료의 적정성 및 신뢰성 확보, 이중관리, 상호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.
  - 2-2. 신상품 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 또는 취급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적정여부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.
  - 2-3. 관계법령, 감독규정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신속·적절하게 규정 및 준칙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체제 운영

###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조직

#### 3. 준법감시인의 임면

- 3-1.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,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3-2. 은행은 준법감시인 임면시 관련 사실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및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, 공석 발생시 지체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4. 준법감시인의 지위 및 임기

은행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.

#### 5.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

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.

- 5-1.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
- 5-2.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게 대한 관련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
- 5-3.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
- 5-4. 내부통제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해 경영진 또는 관련 부서에 시정 요구
- 5-5. 중대한 위법·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감사위원회 앞 제재 의견표명
- 5-6. 위법사항 등(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에 한한다)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
- 5-7. 필요시 이사회 등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진술 (다만 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된다)
- 5-8. 준법감시 담당직원 등에 대한 일부 근무평정
- 5-9.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
- 5-10. 기타 이사회·은행장·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# 6. 준법감시부서

은행은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능력 등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("준법감시부서")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

#### 7.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

- 7-1. 은행은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,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.
- 7-2.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.
  - 7-2-1.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

- 7-2-2. 은행이 수행하는 은행업무,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
- 7-2-3. 그 밖에 이해상충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에 전념하기 어려운 업무로서 관련 법규에서 검직을 금지한 업무
- 7-3. 준법감시인이 전항 각 호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7-4. 은행은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## 준법감시체제 운영

### 8. 준법감시체제의 구축

- 8-1. 은행은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·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8-2. 8-1에 의한 준법감시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8-2-1. 관련 법령,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
  - 8-2-2.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검토 및 정정요구
  - 8-2-3.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작성·배포
  - 8-2-4.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·개정 및 운영
  - 8-2-5. 법규준수, 행정지도 등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자문
  - 8-2-6. 감독당국, 검사부서 및 유관부서에 대한 협조·지원

### 9.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절차 및 방법

- 9-1.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체제를 통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9-2. 준법감시인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- 9-3.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·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 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(감사)담당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### 10.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

- 10-1.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법규 준수여부를 사전검토하여 필요시 정정 요구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방지하여야 한다.
  - 10-1-1. 정관,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
  - 10-1-2. 이사회,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의 부의사항(감사위원회 부의 사항 제외)
  - 10-1-3.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

- 10-1-4.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
- 10-1-5.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
- 10-2.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준수, 행정지도 등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·운영하여야 한다.

### 11. 임직원 교육

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, 행정지도 등과 관련하여 정기·수시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12.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

- 12-1.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점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부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- 12-2.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위법·부당행위 등 발견시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상임(상근)감사위원에게 보고할 수 있다.
- 12-3.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징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13. 타 조직과의 협조

준법감시부와 감사부는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계획 및 감사부의 감사계획 수립시 상호간의 관심사항이 이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, 조정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

## 내부통제 관련 은행(임직원) 준수사항

### 14. 임직원의 의무

- 14-1.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이 제정한 행동강령(윤리강령 포함)을 준수하고, 고객, 주주 및 은행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14-2.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등 위법·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안 된다.
- 14-3. 임직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및 개인·신용정보를 누설, 제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4-4. 임직원은 은행의 고유 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(이하 "비밀정보"라 한다)를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, 내·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.
- 14-5. 임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은행 이용자의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출신국가,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은행 이용자를 우대, 배제,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15.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 관련

- 15-1. 은행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 하고 겸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  - 15-1-1.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
  - 15-1-2.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
  - 15-1-3.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
  - 15-1-4.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
- 15-2. 은행은 15-1에 따른 검토·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15-1의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,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 16. 신상품 개발등의 업무절차

- 16-1. 은행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16-2. 16-1의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6-2-1. 상품 기획·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
  - 16-2-2.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
  - 16-2-3. 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

## 17. 불건전영업행위 금지

은행은 「은행법」제34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은행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익 제공행위,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 지원행위, 정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, 기타 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신용질서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18. 재산상 이익제공

- 18-1. 은행은 「은행법」제34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이익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익제공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18-2. 18-1의 기준 및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8-2-1.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
  - 18-2-2. 이사회 의결 또는 보고
  - 18-2-3.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 점검. 평가절차 등
  - 18-2-4. 18-2-3에 따른 점검. 평가의 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
  - 18-2-5.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

## 19. 불공정거래행위 방지

- 19-1. 은행은 「은행법」제52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 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예금 가입 등의 강요행위, 부당한 담보·보증 요구행위, 부당한 편익 요구 또는 수령행위 기타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19-2.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거래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.
- 19-3. 임직원은 고객 및 이해관계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·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## 20. 금융사고의 예방

- 20-1. 은행은 「은행법」제34조의3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20-1-1. 지점(국외지점 및 국외현지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
  - 20-1-2. 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에 관한 사항
  - 20-1-3. 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
  - 20-1-4. 전산사무,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한 사항
- 20-2. 은행의 임직원은 20-1에 따른 금융사고예방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21.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

- 21-1. 은행은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, 분석,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.
- 21-2. 은행은 자금세탁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, 효과성을 검토·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·운영하여야 한다.
- 21-3. 은행은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  - 21-3-1.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
  - 21-3-2.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

## 22. 이해상충 관리방법 및 절차

- 22-1. 은행은 「은행법」제28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 수행 시 은행과 은행이용자간,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,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

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 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·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.

22-2. 은행은 21-1에 따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## 23. 광고

23-1. 은행은 예금,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「은행법」제 52 조의 3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하여 은행의 명칭, 은행상품의 내용 및 거래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은행 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23-2. 은행은 은행상품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23-3. 은행은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23-3-1. 금리, 계약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또는 비교 공시할 것

23-3-2. 금융거래 단계별로 구분에 따라 해당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것

## 24. 보험상품 모집

24-1. 은행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하여 보험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24-2.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24-2-1. 제휴 보험사의 선정·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

24-2-2. 판매대상 보험상품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

24-2-3.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제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민원 및 분쟁 처리절차와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

24-2-4. 보험회사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

24-2-5.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

## 25. 금융투자업 관련 내부통제

은행은 경영하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마련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」의 별표3 중 4.호(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)가 은행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5-1.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

25-2.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 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

25-3.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

25-4. 기타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의 별표3에서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한 사항

## 보칙

### 26. 고위험사무 직무분리기준

은행은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서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직무분리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인력 부족이나 사안의 시급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분리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완통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운영할 수 있다.

### 27. 정보전달체제

27-1. 은행은 임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은행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·공유되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
27-2. 은행은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26-1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제를 구축한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### 28. 영업점 등 자체점검

28-1. 은행은 각 부점의 업무가 법규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부점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검사(이하 "자점검사"라 한다)하도록 하여야 한다.

28-2. 은행은 자점검사의 방법, 확인사항,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### 29.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·개정

29-1. 은행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·개정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여 각 부점에 비치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
29-2. 은행은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처 운영, 신고자 포상 등과 같은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29-3. 은행은 내부통제체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행동강령 제·개정 및 운영을 준법감시부서가 아닌 여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준법감시부서는 준수 여부 점검만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### 30. 내부고발제도

30-1. 은행은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총괄 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

30-2.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금지 등 보호조치와 은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·부당한 행위를 인지 하고도 은행에 제보하지 않은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.

### 31. 명령휴가

은행은 임직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, 실시주기, 명령휴가 기간,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
### 32. 제·개정

이 준칙을 제·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그러나 법령 및 내규의 개정 에 따른 용어 변경, 단순한 조직체계의 변경, 기타 체제 변경이나 자구 수정 등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 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은행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
### 33. 세부지침 위임

이 준칙의 시행 및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은행장 혹은 규정관리준칙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내부통제기준"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
2. "내부통제"라 함은 은행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을 말한다.
3. "내부통제체계"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, 업 무분장 및 승인절차, 의사소통, 모니터링, 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 한다.
4. "준법감시"란 내부통제의 일부분으로서 은행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법령 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법령 위반행위를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는 사전·상 시적 통제과정을 말한다.
5. "준법감시체제"란 내부통제체계의 일부분으로서 효과적인 준법감시 활동 을 수행하기 위한

조직구조,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, 의사소통·모니터링·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.

6. "준법감시인"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 준칙 제 3 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.

7. "법령"이란 상법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 2 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·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.

그 밖에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'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', '은행법'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